

## 일 반 중 개 계 약 서

의뢰내용

매도·매수·임대·임차·기타(            )

중개의뢰인(갑)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뒤쪽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중개업자(을)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.

### 1. 을의 의무사항

을은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.

### 2. 갑의 권리·의무사항

- ① 갑은 이 계약에 불구하고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중개업자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.
- ② 갑은 을이 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5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확인·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.

### 3. 유효기간

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       년        월        일까지로 한다.

※ 유효기간은 3월을 원칙으로 하되,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.

### 4. 중개수수료

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성립한 경우 갑은 거래가액의 (        )%(또는        원)을 중개수수료로 을에게 지급한다.

※ 뒤쪽 별표의 요율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, 실비는 별도로 지급한다.

### 5. 을의 손해배상 책임

- 을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1) 중개수수료 또는 실비의 과다수령 : 차액 환급
  - 2) 중개대상물의 확인·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: 손해액 배상

### 6. 그 밖의 사항

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간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쌍방이 1통씩 보관한다.

년        월        일

### 계 약 자

중개의뢰인(갑) : 성명  
주소/체류지

(서명 또는 인)

주민등록번호/외국인등록번호  
(전화번호 :            )

중개업자(을) : 성명(대표자)  
상호(명칭)  
사무소 소재지

(서명 또는 인)

주민등록번호/외국인등록번호  
등록번호  
(전화번호 :            )

(뒤 쪽)

※ 중개대상물의 거래내용이 권리를 이전(매도·임대 등)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Ⅰ.권리이전용(매도·임대 등)」에 기재하고, 권리를 취득(매수·임차 등)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Ⅱ.권리취득용(매수·임차 등)」에 적습니다.

Ⅰ. 권리이전용(매도·임대 등)
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|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|------|--|
| 구 분                | 매도·임대·기타(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|      |  |
| 소유자 및<br>등기명의인     |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주민등록번호/<br>외국인등록번호 |            |  |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|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|      |  |
| 중개대상물의<br>표시       | 건축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재지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| 건축연도 | 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면적  | m <sup>2</sup>     | 구 조        |  | 용 도  |  |
|                    | 토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재지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| 지 목  | 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면적  | m <sup>2</sup>     | 지역·지구<br>등 |  | 현재용도 |  |
|                    | 은행융자·권리금·세세공과금 등<br>(또는 월임대료·보증금·관리비<br>등) |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|      |  |
| 권 리 관 계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|      |  |
| 거래규제 및<br>공법상 제한사항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|      |  |
| 중개의뢰금액             |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 타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|      |  |

Ⅱ. 권리취득용(매수·임차 등)

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
| 구 분       | 매수·임차·기타( ) |         |
| 항 목       | 내 용         | 세 부 내 용 |
| 희망물건의 종류  |             |         |
| 취득희망가격    |             |         |
| 희 망 지 역   |             |         |
| 그 밖의 희망조건 |             |         |

<별표> 중개수수료 요율표(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요율표 수록)

※ 해당내용을 요약하여 수록하거나, 별지로 첨부합니다.

[중개업자 위법행위 신고안내] 중개업자가 수수료 과다수령 등 위법행위시 시·군·구 중개업 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, 시·군·구에서는 신고사실을 조사한 후 적정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.